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76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김보경 의원, 신동윤 의원

##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발생한 농업재해 중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업경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5조)

다. 피해발생 신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과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8조)

## 3. 제정 조례안 :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다.
2.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로 인한 직접 피해가 발생했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해당하여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재해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 발생일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인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같은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따른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군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재난지수별 복구비 지원금 기준표(제7조관련)

재 난 지 수	복구비지원금(원)
200이상 ~ 300미만	300,000
100이상 ~ 200미만	200,000
50이상 ~ 100미만	100,000

※ 재난지수 50미만 : 복구비 지급 제외

## □ 「농어업재해대책법(법률)」(2025.4.22. 일부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10. “농업용 시설”이란 축사(畜舍), 잠실(蠶室), 원예 재배시설, 그 밖에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및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뭄 피해 대책의 경우

- 가. 양수(揚水)를 하였을 때에는 그 양수에 든 유류대금(油類代金) 및 전기료
- 나. 양수기와 양수용 발동기의 구입비
- 다. 양수용 펌프와 관정(管井)의 시설비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流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유실되었거나 죽은 가축을 갈음하여 새로 가축을 기르는 경우: 어린 가축의 구입비
7. 유실되거나 매몰된 초지(草地)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8. 유실되었거나 죽은 누에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 사육비
- 8의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거나 새로 가축을 기르기 위하여 농작물·산림작물 또는 가축을 폐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폐기비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 가. 이재민의 구호
  - 나.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 다. 영농자금(營農資金)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해양수산부령)」**  
**(2021.10.14. 일부개정·시행)**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어업재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제2조·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른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등)** ①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및 어가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25.9.30. 타법개정, 2025.10.23. 시행)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6조(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난의 복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

8.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②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소득금액증명

3. 가족관계증명서

⑥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여행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⑨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주택피해가 확인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의 재난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식·양식 시설 등 중앙대책본부장이 복구를 완료한 후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복구비 지원 시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안 제4조,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에 따른 비용 발생은 ‘농업재해에 따른 피해가 있는 경우’로, 매년 재해 발생에 따라 추경 편성 또는 예비비로 지출해왔음. 또한 지난 3년간 지원 금액을 보면 연 1억 미만임.

- ▶ 2023년 ‘이상저온(냉해) 피해농가 복구 지원’
  - 33농가, 시비 3,560천원/군비 21,854천원(예비비 16,514천원(국비 미지원분))
- ▶ 2024년
  - 1) 일조량 부족 피해농가 복구 지원
    - 212농가, 국비 45,850천원/시비 13,732천원/군비 29,859천원
  - 2) 일조량 부족 피해(마늘, 양파)농가 복구 지원
    - 75농가, 국비 8,570천원/시비 3,821천원/군비 8,500천원
- ▶ 2025년 ‘3~4월 이상저온 피해(과수) 농가 복구 지원’
  - 30농가, 국비 9,800천원/시비 1,680천원/군비 4,833천원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성군의회 의원	성 명 (연 락 처)	양 은 숙 (☎ 2048)
-----------	----------	-------------	----------------